

협 의 공 고 (공 시 송 달)

국토교통부 및 넥스트레인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‘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’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토지보상법’이라 함)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,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1. 10 .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1. 사업의 개요

- 사 업 명 :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
- 사 업 위 치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~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
- 사업시행자 : 국토교통부, 넥스트레인 주식회사(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(일직동) 광명국제무역센터 C동 303호)
- 보상업무위탁(수행)기관 : 한국부동산원(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(신서동))

2. 협의기간·협의장소 및 협의방법

- 협의기간 : 본 공고일로부터 14일간(단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
- 협의장소 : 서울강남지사 공익보상1부 신안산선사업소
(☎ 02-2075-0805,0825,0802) / FAX 02-2075-0830)
- 협의방법 : 소유자별로 개별협의하며,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(구비서류 미비 시 협의 계약이 불가하오니,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).

3. 보상절차·방법 및 보상시기

- 보상협의요청(보상금 개별통지) → 협의성립(계약체결) → 구분지상권 설정 → 보상금지급
-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(또는 소송)
- 보상금 지급은 계약일로부터 약 20일 이내(등기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)에 지급되오며, 보상자금 부족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 보상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보상액에 대하여는 소유자 확인 후,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.

4. 주의사항

- 토지 등의 소유자께서는 토지 또는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저당권 등(소유권 외 권리사항)을 먼저 해지(해제) 후 계약이 가능합니다.
- 토지 지하부분 사용보상은 해당 토지에 구분지상권설정을 위한 계약으로서, 지분소유일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하나의 계약서 등에 모두 날인하셔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며, 지분소유자 개별적으로 계약체결은 불가합니다.
-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상금의 압류 등 보상금 지급 불가 사유 발생 시, 협의계약이 불가하오며 협의계약 이후(보상금 지급 전) 압류 등 발생 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됩니다.

- 관계인께서는 필요 시 소유자의 보상금액에 대하여 **제3채무자를 국토교통부**로 하는 별도의 채권 보전을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- 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**상속등기 완료 후** 보상협의(계약)에 응하시길 바랍니다.
- 대리인이 계약 시 대리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실 경우 소유자와 유선연락 등의 확인절차가 진행되오며, 확인 불가 시 계약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5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
-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일반용 2부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부)
- 소유자의 주민등록초본 2부(주소변경사항 모두기재,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)
-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(보상금 수령용)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- 소유자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(보상금청구서 등 당원 양식에 날인)

6. 협의공고(공시송달) 대상

- 불임 공시송달 공고 조서 참조